

신탁계약 변경대비표

1. 대상펀드

- 한화러시아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□ 변경사유

- 전환형 집합투자기구("한화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")에 관한 사항 변경

- 1) 전환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변경 [변경전 : 한화브라질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→ 변경후 : 한화브라질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]
- 2) 전환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삭제 [사유 : 해당 펀드는 소규모펀드로 2024.02.27 자로 임의해지]
 - ① 한화글로벌별전환사채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
 - ② 한화이머징국공채증권 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
구 분	현 행	변경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1. ~ 11. (생 략) 12. "전환"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"한화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"라 한다) 중 하나의 투자신탁의 UA클래스 또는 UC-E클래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(이하 "전환대상투자신탁"이라 한다)의 UA클래스 또는 UC-E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. <u>가. 한화글로벌별전환사채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</u> 나. 한화러시아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다. 한화미국대표증권 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 <u>라. 한화브라질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u> 마. 한화유럽대표증권 자투자신탁(UH)(주식-재간접형) <u>바. 한화이머징국공채증권 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</u> 사.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아. 한화천연자원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	1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"전환"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"한화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"라 한다) 중 하나의 투자신탁의 UA클래스 또는 UC-E클래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(이하 "전환대상투자신탁"이라 한다)의 UA클래스 또는 UC-E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. <u>가. (삭 제)</u> 나. 한화러시아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다. 한화미국대표증권 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 <u>라. 한화브라질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</u>) 마. 한화유럽대표증권 자투자신탁(UH)(주식-재간접형) <u>바. (삭 제)</u> 사.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아. 한화천연자원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	자.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	자.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제25조의 4(투자신탁간의 전환)	<p>②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처리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한화글로벌전환사채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, 한화러시아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, 한화미국대표증권 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, 한화 브라질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, 한화유럽대표증권 자투자신탁(UH)(주식-재간접형), 한화이머징국공채증권 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 및 한화천연자원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(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)에 전환처리한다. (이하 생략)</u></p>	<p>②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처리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한화러시아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, 한화미국대표증권 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, 한화브라질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, 한화유럽대표증권 자투자신탁(UH)(주식-재간접형) 및 한화천연자원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(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)에 전환처리한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</u></p>
부 칙	(신설)	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정정 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(2024.03.14)</u></p>